#### [서식 예] 반소장(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)



# 반 소 장

사 건(본소) 2000가단000 공사대금

피고(반소원고) ◇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원고(반소피고)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반소원고)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.

#### 하자보수 등 청구의 소

### 반소청구취지

- 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0○○. ○. ○.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 선 내 빗금 친 부분 (가),(나),(다),(라),(마), (바),(사),(아) 지점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규격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공사를 이행하라.
- 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0〇〇. 〇. 〇.부터 위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월 금 2,0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- 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반 소 청 구 원 인

1. 원고(반소피고,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)가 이 사건 건물을 수급 받아 완공한

사실은 인정합니다.

- 2. 피고(반소원고,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)가 이 사건 건물 완공에 따른 공사대를 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.
- 3. 그러나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 건물이 설계도면과 달리 조적조로 시공되어 구조안전 측면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현재는 공사가 완 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위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어 이는 매우 중대한 하자이며, 각 층마다 별지3 기재 규격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4개를 세운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서 이는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4.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완공된 건물에 있는 하자의 보수 의무가 있고, 건물에 생긴 하자 및 보수의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건물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.
- 5. 그러므로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의 공사잔대금청구에 대하여 위 하자 보수청구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위 건물의 하자보수가 20〇〇. 〇. ○.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

1. 을 제2호증의 1, 2 각 하자부분 사진

1. 을 제3호증 설계도면

1. 을 제4호증 공사시방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반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### 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	기기기 내고고려 귀레리/테기기
제출법원	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민사소 송법 제269조 제1항)
제출부수	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. 위 서식에서는 별지 부동산목
	록과 별지도면 등이 생략되어 있으나, 실제로 소장을 작성할 경우
	별지 부동산목록과 별지도면 등을 작성·첨부하여야 함.
비 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※ 아래(1)참조
	단,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
	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)
11 11 -1 -1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·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
기 타	· 관정된 목적물 모든 관정 전의 정위된 무문에 아자가 있는 때에는 모由 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(補修)를 청
	구할 수 있으나,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(補修)에 과다
	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(補修)에
	한 비능을 요할 때에는 그리아서 아니함. 고급한는 아자리 모구(細形)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(補修)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민법 제
	설심이의 또는 모기(袖底)와 함께 는에배경을 경기될 가 있음(단법 제 667조 제1항, 제2항).
	·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
	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(補修)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하자의 보수(補修)
	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(補修)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, 이
	등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(報酬)지급청구권과
	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(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2001다
	21632 판결). ·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
	데(민사소송법 제271조),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
	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
	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
	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,
	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
	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,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
	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(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298 판결).
	•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
	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, 상대방이 이의를
	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
	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(민사소송법 제412조).
	·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, 반
	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
	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
	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
	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
	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
	하여야 할 것임(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9다6708 판결).



#### 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